

ESG위원회 규정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SK스퀘어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ESG위원회에 관하여는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구성 및 위원 선임)

- ① ESG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한다.
- ② ESG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선임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- ③ ESG위원회는 제반 업무를 처리케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이사회 업무의 주무부서장으로 한다.

제4조 (위원장)

- ① ESG위원회는 위원의 호선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둔다.
-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의 호선으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.

제5조 (권한)

- ① ESG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1. ESG 주요 분야 추진 방향 및 성과
 2. ESG 의무 공시 사항
 3. ESG 관련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
- ② 제1항에 따라 ESG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해당 사항을 이사회에 상정할 수 있다.
- ③ 이사회는 제2항에 따라 상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,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6조 (소집)

- ① ESG위원회는 개최의 필요성이 있거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

소집한다.

- ② ESG위원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규정 제7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.

제 7 조 (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)

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8조 (의사록)

- ① ESG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9조 (규정의 개정)

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결의에 의한다.